###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58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김용태·정성국·강선영

김대식 • 한기호 • 서천호

조정훈 • 서지영 • 김성원

이주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임에도 불 구하고 수도권에 속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 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
- 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 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u>「수도권정</u>	1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	
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	
다.	
<u>&lt;신 설&gt;</u>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이 아닌 지역
<u>&lt;신 설&gt;</u>	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 접경지역</u>
<u>&lt;신 설&gt;</u>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
	<u>감소지역</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